[별지 제13호서식(제33조 제2항, 제37조 제3항)]

(앞면)

국유재산 [(　　) 대 부 (　　)변상금 / (　　) 매 각 대 금] 분할납부 신청서					처리기간
					20일
신청인	①성 명	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 소			④ 전 화 번 호	

⑤신청내용						
재 산 의 표 시			신청면적 (㎡)	신청사유	분납형식	비고
소 재 지	지 목	지적(㎡)				
가. 대부료의 경우						
					1년에(　)회	
					1년에(　)회	
					1년에(　)회	
					1년에(　)회	
나. 변상금, 매각대금의 경우						
					(　)년 분할	
					(　)년 분할	
					(　)년 분할	
					(　)년 분할	

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제36조・제37조 또는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

위 재산의 [(　) 대부료 (　) 변상금 / (　) 매 각 대 금] 을(를) 분할납부하고자

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귀 하

구 비 서 류	수 수 료
없　　음	없　　음

(뒷면)

※ 대부료 금액이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
※ 변상금 :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
※ 매각대금 :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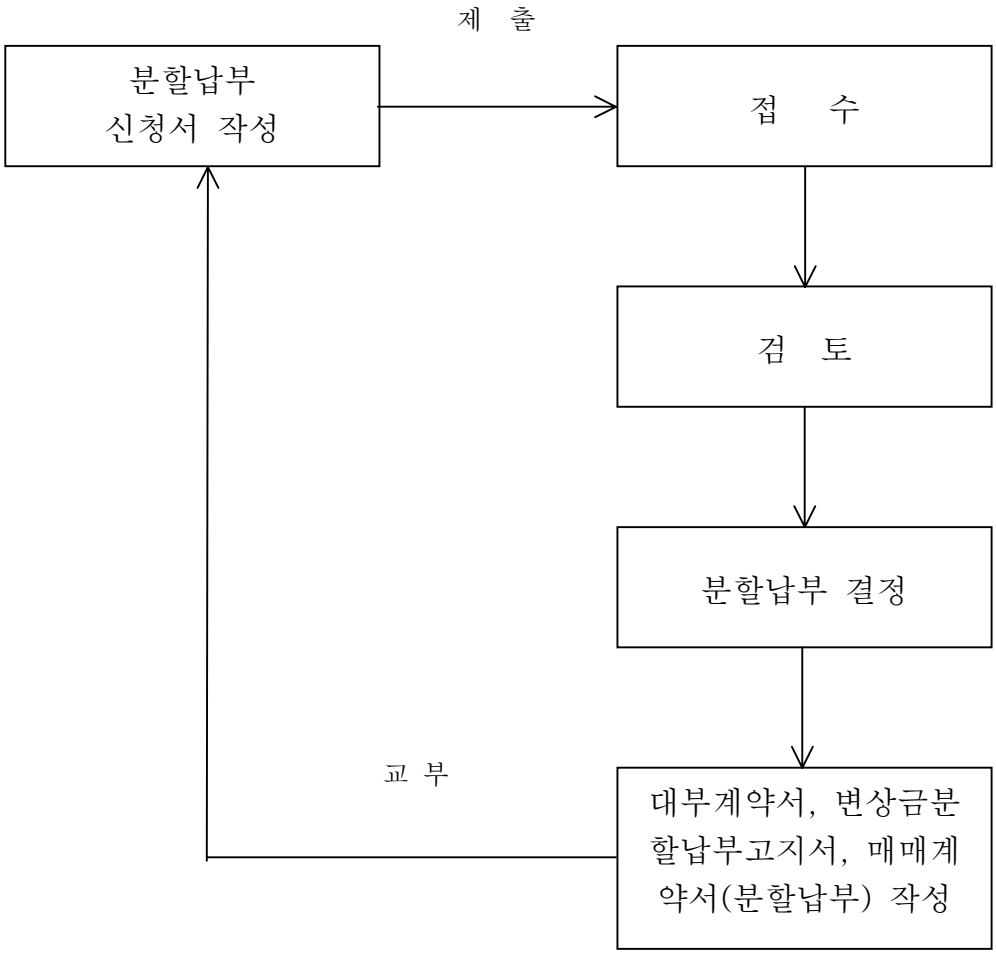
신 청 인	처 리 기 관
	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